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의안 번호	1858
----------	------

2024년 6월 18일  
도시계획균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자 : 황철규 의원 (찬성의원 24명)  
나. 제안일 : 2024. 5. 27.  
다. 회부일 : 2024. 5. 30.  
라. 상정일 : 제324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3차 도시계획균형위원회  
2024년 6월 18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황철규 의원)

가. 제안이유

- 2022년 8월 재개장에 의해 규모와 형태 등이 변경된 광화문광장의 장소 정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
- 광화문 광장의 국가적 상징성을 고려하여, 국가적·국민적 요구에 따른 긴급한 사용신청의 경우에는 예외적인 사용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유연한 운영을 도모하고 광화문 광장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함

## 나. 주요내용

- 광화문광장의 변경된 형태 등을 반영하여 장소 정의를 재규정함(안 제2조제1호)
- 공익목적의 국가행사의 경우, 예외적으로 긴급한 사용신청이 가능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함 (안 제5조제1항)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조성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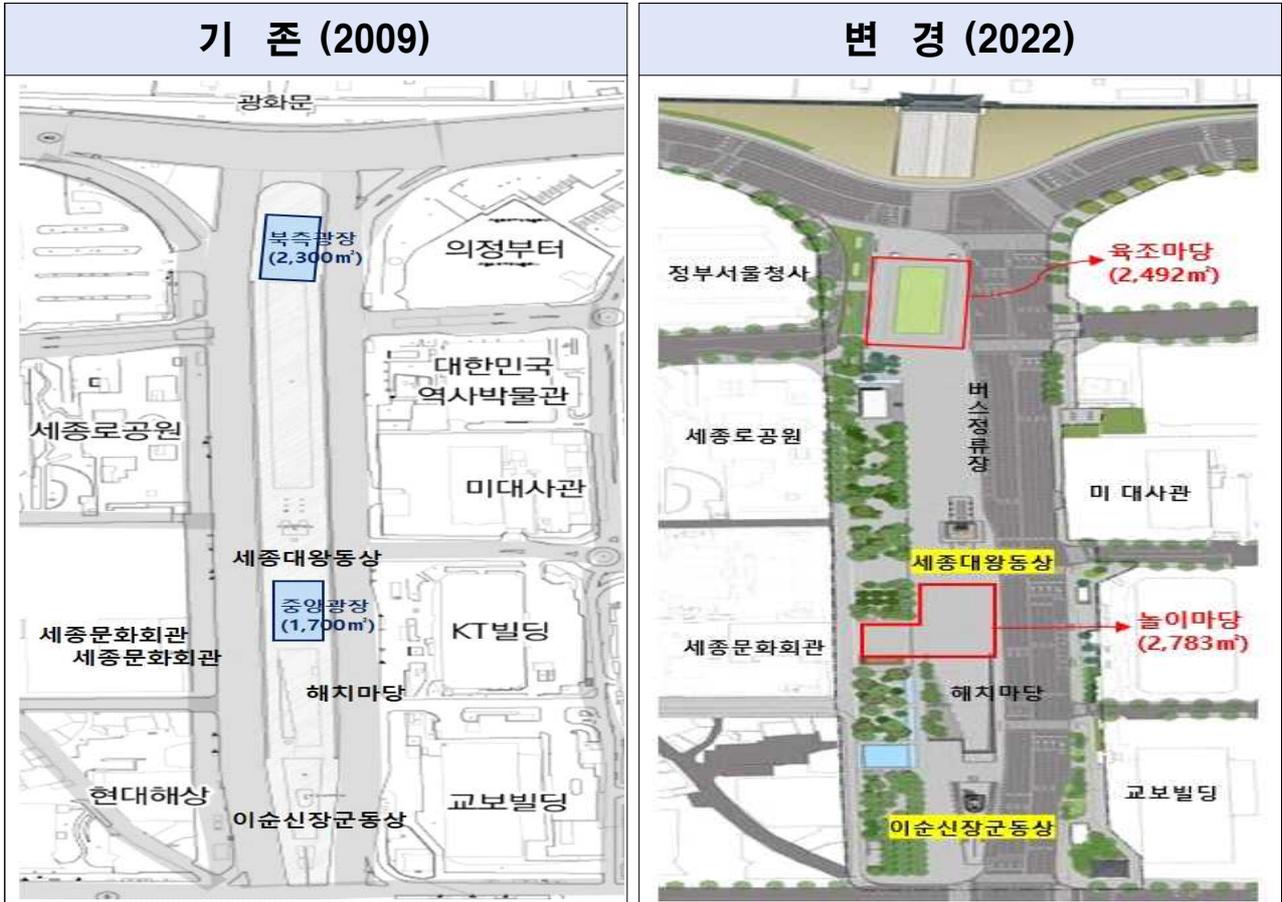
### 가. 개요

- 이번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광화문광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으로 인해 그 규모와 형태 등이 변경된 광화문광장의 장소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광화문광장의 국가적 상징성을 고려하여 공익목적으로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의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신청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u>“광화문광장”이란 세종로 중앙의 차도와</u>	제2조(정의) ----- -----  1. <u>“광화문광장”이란 종로구 세종로 1-68번</u>



## 〈 재구조화 전 · 후 광화문광장 〉



### □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추진경과

- |                             |              |
|-----------------------------|--------------|
| - 재구조화 기본계획 발표(문화재청, 서울시)   | '18. 4. 10.  |
| - 광화문광장 조성 착공               | '20. 11. 26. |
| - 세종대로 동측도로 양방향 개통          | '21. 3. 6.   |
| - 광화문광장 보완·발전 추진 확정(안) 발표   | '21. 6. 24.  |
| - 역사광장 조성 착공                | '22. 2. 7.   |
| - 광화문광장 개장(시민광장 개장)         | '22. 8. 6.   |
| - 광화문 월대 주변 매장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착수 | '22. 9. 19.  |
| - 시민광장 조성 공사 준공             | '22. 11. 30. |
| - 매장문화재 보존 및 월대 주변 보도공사 완료  | '23. 8. 14.  |
| - 역사광장 개장(월대복원)             | '23. 10. 15. |

## □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개요

구분	시민광장 조성	역사광장 조성
도로구조	사직로: 노선유지(T형) 세종대로: 서측광장, 동측도로	사직로: 노선유지(유선Y형) 세종대로: 서측광장, 동측도로
광장면적	26,200㎡	14,100㎡
사업비	610억원	205억원
사업내용	판석포장, 수목식재, 해치마당리모델링, 수경시설 설치, 세종로공원 개선 등	판석포장, 조경, 우회도로 건설 등
공사기간	2020.11 ~ 2022.11	2021.10 ~ 2023.12
역사성 강화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동상 등 역사문화 콘텐츠 특화	문화재 복원(광화문 월대, 해치상)
관련 도면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제1호는 “광화문광장”의 정의에 관한 것으로, ‘정의’ 규정은 조례를 해석하고 적용할 때 나타나는 의문점을 없애고 법적 분쟁을 미리 예방함으로써 일관성 있게 조례를 집행하려는 것인 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이후 장소적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광장의 정의를 재정비하는 것은 타당하다 생각함
- 「광화문광장 조례」 제정(2009.5.28. 시행) 당시 “광화문광장”에 대한 정의는 필요에 따라 확대되는 개념이었으나, 조례 개정(2016.1.17. 시행)을 통해 현재의 ‘세종로 중앙의 차도와 구분되는 장소’로 보다 간결하고 명확하게 재정의 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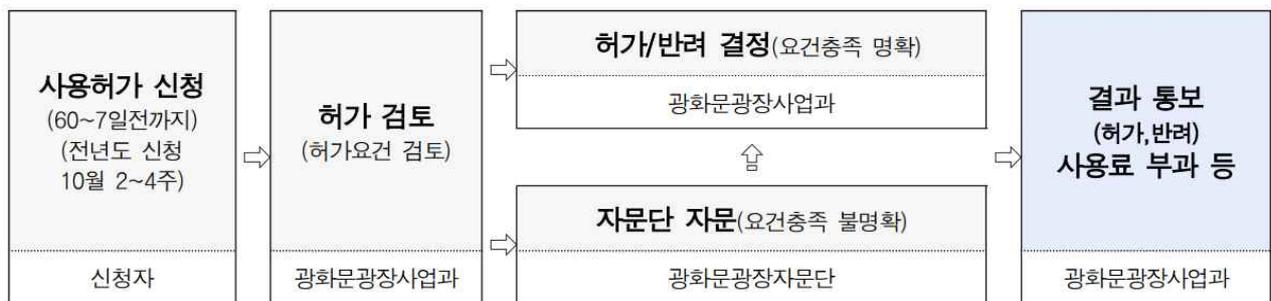
- 광화문광장의 관리·운영은 현행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균형발전본부(광화문광장사업과)가 총괄부서로서 광화문광장의 사용허가 및 조형물 등 이용승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현행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광장을 사용하려는 날의 60일전부터 7일전까지 제출된 사용허가 신청서에 한해서만 검토 후 사용허가 승인을 하고 있음
- 또한, 사용허가 영역을 벗어난 광장의 전체적인 사용을 필요로 하는 예외적 광장 사용에 대하여는 별도의 허용기준<sup>1)</sup>을 마련하고 광화문광장자문단<sup>2)</sup>을 거쳐 광장의 사용 여부를 최종 결정함

**<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전·후 사용허가·자유이용 면적 변화 >**

구 분	총 면적	사용허가 면적	사용허가 영역	자유이용 면적
기 존	18,840㎡	4,000㎡	북측(광화문 앞) 2,300㎡, 중앙(세종대왕 앞) 1,700㎡	14,840㎡
변 경	40,300㎡	5,275㎡	육조마당(잔디영역) 2,492㎡, 놀이마당 2,783㎡	35,025㎡

< 자료: 균형발전본부 광화문광장사업과 >

**< 광화문광장 사용허가 절차 >**



< 자료: 균형발전본부 광화문광장사업과 >

1) 「광화문광장 관리·운영 보완·개선 계획(안)」(행정2부시장 제253호\_광화문광장사업과-2661(2022.11.7.))  
 2) < 광화문광장자문단 구성·운영 현황 >  
 - 기능 : 기준초과·대규모 행사 등 광장 사용허가 사항 자문  
 - 구성 : 안전, 소음, 법률, 교통 등 분야별 전문가 6인  
 - 운영주기 : 월 2회(서면 1회, 대면 1회)

- 광화문광장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공공장소로서 재개장 이후에도 현재까지 총 120건<sup>3)</sup>의 사용허가 신청이 있었으며, 월드컵 대한민국 승리의 거리응원, 국군의 날 군문화축제 등 국가적 행사 운영에 사용되고 있음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적 상징성을 가진 대표적 도심공간에서 공익목적의 국가적 행사, 대규모 스포츠이벤트 등을 위해 긴급하게 광장 사용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1~6일 전이라도 사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 대규모 국가적 행사의 경우 사전에 계획되어 현행 조례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나, 코로나 엔데믹 선언 이후 발생한 ‘U-20 월드컵 거리응원(’23.6월)’이나 ‘세계 잼버리 지원 행사(’23.8월)’와 같이 사전에 계획되거나 예측하지 못한 공익목적의 긴급한 광장 사용요청에 대응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겠음

#### 다. 종합 의견

- 이번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이후 재개장된 광화문광장의 장소적 정의를 명확히 하여 광장의 이용·관리에 혼란이 없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음
- 또한, 국가적·국민적 요구에 따른 공익목적의 긴급한 광장 사용요청에 한해 예외적인 사용허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불가측성을 고려한 광장의 유연한 사용을 도모하는 한편 국가상징 공간으로서 광화

3) 연도별 허가현황 : 2022년 40건 / 2023년 66건 / 2024년(현재일 기준) 14건

문광장의 위상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와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겠음

- 다만, 집행부서에서는 긴급한 사용허가 신청의 경우라 하더라도 대규모 행사장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관리와 안전조치 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광장 사용허가 시 더욱 세심한 검토와 관리가 필요하다 하겠으며, 이로 인한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락**

**6. 토    론    요    지 : 없            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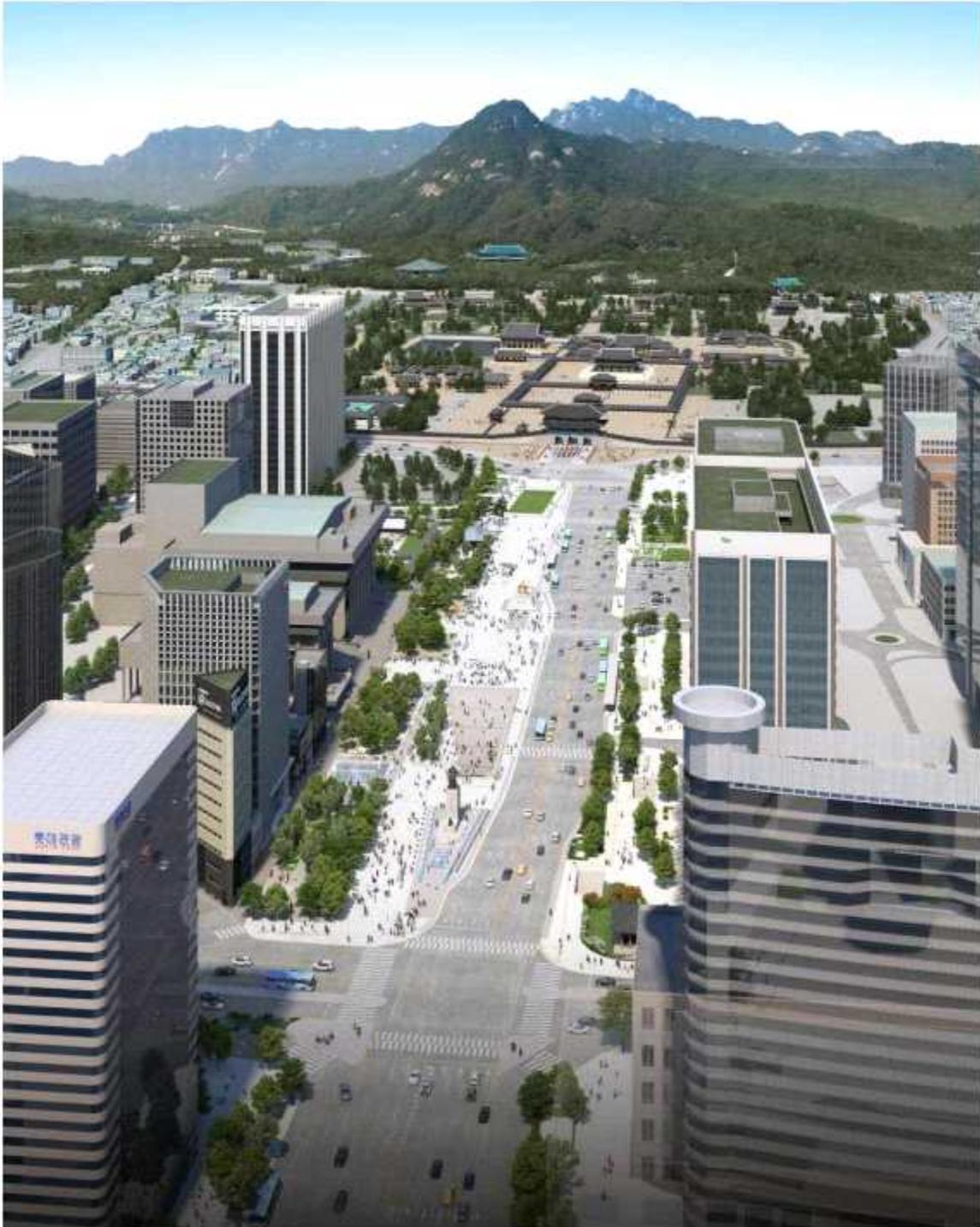
**7. 심    사    결    과 : 원    안    가    결**

**8. 소   수   의   견   의   요   지 : 없            음**

**9. 기   타   필   요   한   사   항 : 없            음**



□ 광화문광장 조감도



#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철규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858
----------	------

발 의 년 월 일: 2024년 05월 27일

발 의 자: 황철규 의원(1명)

찬 성 자: 김규남, 김길영, 김동욱,  
김영철, 김재진, 김춘곤,  
김태수,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민병주, 박상혁,  
박 석, 박영한, 박춘선,  
유만희, 유정인, 윤기섭,  
이상욱, 장태용, 최민규,  
허 훈, 홍국표, 황유정  
의원(24명)

## 1. 제안이유

- 2022년 8월 재개장에 의해 규모와 형태 등이 변경된 광화문광장의 장소 정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
- 광화문 광장의 국가적 상징성을 고려하여, 국가적·국민적 요구에 따른 긴급한 사용신청의 경우에는 예외적인 사용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유연한 운영을 도모하고 광화문 광장의 위상을 제고 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가. 광화문광장의 변경된 형태 등을 반영하여 장소 정의를 재규정함(안 제2조제1호)
- 나. 공익목적의 국가행사의 경우, 예외적으로 긴급한 사용신청이 가능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함 (안 제5조제①항)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 : 신 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광화문광장”이란 종로구 세종로 1-68번지 일대 광장 형태로 조성된 장소를 말하며, 해당구역 내 설치된 부대시설물을 포함한다.

제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적 행사 등 공익을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화문광장의 변경된 형태 등을 반영하여 장소 정의를 재규정하고, 공익목적 국가행사의 경우 예외적 긴급 사용의 단서 조항을 신설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김중헌
추 계 분 석 관	김지혜

☎ 02-2180-7953  
e-mail : kjh0123@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